

AI·IR센터규정

5-1-67

규정번호 5-1-67
제정일자 2022.2.21
최근개정 2026.5.18
개정차수 4차 개정
관리부서 AI·IR팀

[규정명 변경 2026.2.6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성과분석, 환류관리 및 정보공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AI·IR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기능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4.7.24., 2026.2.6.)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조전면개정 2026.3.23.)

1.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
2. 성과지표 개발
3. AI 및 일반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성과분석
4. AI 및 일반 비교과프로그램 성과관리시스템 운영
5.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및 결과분석
6. 대학교육편제단위조사(표준분류체계) 및 사후관리
7.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및 사후관리
8. 대학정보공시 운영 및 주요지표 분석·비교
9. 대학산학협력활동 및 연구활동 실태조사
10. 성과관리 결과 보고 및 구성원 공유
11. AI·IR센터 운영위원회 운영
12. 기타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

[전면개정 2026.3.23.]

제 3 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학혁신본부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 (성과관리) ① 센터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매 1년마다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수립된 기본계획은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.

② 센터는 상시 성과관리를 추진하며, 각 학과 및 부서는 이에 필요한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센터는 매해 대학의 성과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

야 한다.

④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한 개선방안은 차년도 사업계획 및 대학의 성과관리 수립 시 반영한다.

⑤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성과분석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.(신설 2024.7.24.)

제5조(위원회) ① 대학 성과관리 전반적인 사항과 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AI·IR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개정 2026.2.6.)

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 및 우리대학 교직원, 학생,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, 위촉직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부서 팀장을 간사로 둔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<삭제(2026.3.23.)>

2. <삭제(2026.3.23.)>

3. <삭제(2026.3.23.)>

4. <삭제(2026.3.23.)>

5. 제2조에 명시된 업무의 계획·운영·평가 및 환류에 관한 중요한 사항(신설 2026.3.23.)

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(개정 2026.3.23.)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(개정 2026.5.18.)

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제 8 조 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보직자 위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 9 조 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우리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1호~제6호, 제4조제5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2조제5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·제9호·제10호, 제5조제1항)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67 AI·IR센터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되,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(제2조, 제6조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·제5호·제6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(제7조제1항)